

“미래를 설계하는 학교, 함께하는 운중 교육”



운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6.

운중고등학교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2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3
제4장 생활지도의 방식	4
제5장 학생생활교육	9
제6장 학생생활	16
제1절 교내생활	16
제2절 교외생활	19
제7장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20
제8장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23
제9장 학급자치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및 학급 자치회 구성	26
제10장 규정의 제·개정	28
부칙	30
[서식 1] 학생 자기 변론서	31
[서식 2] 목격자 확인서	32
[서식 3] 교사 사실 확인서	33
[서식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34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35
[서식 6] 서면 의견서	36
[서식 7] 조치 결정 통지서	37
[서식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38
[서식 9] 재심의 조치 결정 통지서	39
[서식 10]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40
[서식 11] 후보자 등록 신청서	41
[서식 12] 학생 추천서	42
[서식 12] 교사 추천서	43

운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운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운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7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 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 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10조 【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흡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12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 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3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⑦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5조에 따른 조언, 제16조에 따른 상담, 제1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8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 상담실, 위클래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교실 내 혹은 외부로의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뒤편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위치에서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년 상담실,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등 대체 학습 과제 부여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년 상담실,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도서실, 위클래스)	-3호 절차 동일 - 학교장에게 분리 사실 보고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대체 학습 과제 부여

제23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2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은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부장, 진로진학부장,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감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학생생활부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간사 : 해당 학년의 생활교육계 교사가 담당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③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25조 【선도의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2.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학생
 3.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 ②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 ④ 학생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과 학급자치규약을 토대로 지도한다.
- ⑤ 학급자치규약에는 자기성찰록 작성, 학급 내 봉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⑥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에 의해 직접 행해져야 하며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사회 봉사 및 특별교육은 기관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26조 【선도의 심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생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사나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또는 자기변론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가 있음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됨

제27조 【재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재심의 신청 기한은 조치를 안날, 즉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초일(1일)로 계산하여 5일 경과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 이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민법 제6장 기간, 제155~161조> 이외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간도 동일함.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④ 학교장은 이를 검토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재심이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

제28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 내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는 사안에 따라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⑤ 퇴학처분

제29조 【선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년부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상담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단,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실시기관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단, 실시기관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 내의 특별교육 및 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출석정지”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⑥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선도의 세부사항】 선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5.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 처리
- ④ 출석정지
 1. 학교 출석정지
 2.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 실시
 3.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함

4.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 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⑤ 퇴학처분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타 교육기관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선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1조 【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32조 【심의 확정】 학생선도는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3조 【조치결정 통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학교 내 재심의 청구,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4조 【선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 【선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6조 【선도의 기준】 선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중고등학교 선도 기준】

구 분	항 목	사안 내용	선도 사항					학 부 처 분
			학 교 내 봉 사 [-5일, -10시 간]	회 사 봉 사 [1일- 5시간, -5일]	특 교 이 [-30 시간]	별 육 수	성 지 회 정 [1회 -10일 연, 30 일]	
기 본 생 활 습 관		▶기본생활습관						
	1	용의 및 복장이 적절하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2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			
준 법 및 공 공 기 물 관 리		▶준법						
	3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폭언) 및 폭력을 가한 학생			○	○	○	○
	5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6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	
	7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8	공공문서(제증명,식권,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	○
	9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10	학교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	○	○	○	
	11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	○
	12	학교에 출입시 월담한 학생	○					
	13	학교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14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15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	○	
	16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17	불온문서를 소지, 탐독한 학생이나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	○	○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						
	18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19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					
	20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21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22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구 분	항 목	사안 내용	선도 사항				
			학교 내 봉 사 [-5일, -10시 간]	회 사 봉 사 [1일- 5시간, -5일]	특 교 이 [-30 시간]	별 육 수 출 석 정 [1회 -10일 연30 일]	학 부 처
집단 행위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23	주동 및 참여한 학생	○	○	○		
	24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25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26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27	불량 동아리 카페를 조직, 운영하여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게 한 학생	○	○	○		
	28	불량 동아리를 조직했거나 가입한 학생		○	○	○	○
	29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수업 및 시험		▶ 학습					
	3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	○		
	31	수업을 거부하거나 수업 중도에 교사의 허락 없이 미인정으로 나간 학생		○	○	○	
		▶ 정기고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2	답안지를 서로 바꾸거나 메모하여 이용, 정답을 보여 준 학생	○	○	○		
	33	전자기기를 이용한 학생		○	○	○	
	34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된 학생	○	○			
	35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근태		▶ 학생 출결					
	37	미인정 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 조퇴가 상습적인 학생	○	○	○		
	38	미인정 결석이 상습적인 학생	○	○	○	○	
	39	반복적으로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를 이탈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를 배회하는 학생	○	○			
약물 및 음주· 흡연		▶ 흡연					
	40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흡연으로 받은 선도 처분은 재학 중 3년 동안 소급됨)	○	○	○	○	
	41	약물·음주·흡연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구분	항목	사안 내용	선도 사항					학 부 분
			학 교 내 사 안 [-5일, -10시 간]	사 본 [-5 간 일]	회 사 일 시 -5 []	특 교 이 [-30 시 간]	별 육 수 [30 시 간]	
약물 및 음주· 흡연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42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음주						
	43	교내·외를 막론하고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		
안전		▶안전						
	44	흥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학생	○	○	○	○		
	45	원동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탑승하고 교내로 진입하는 학생	○	○				
금품		▶절도, 사취 등						
	46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학생	○	○	○			
	47	타인의 금품을 상습 절취한 학생		○	○	○	○	○
불건전 행위		▶불건전 행위						
	48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	○			
	49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및 소지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50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
	51	교외생활지도 및 연합교외지도시 지도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52	연인간 지나친 신체접촉을 한 학생	○	○	○	○		
	53	학생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정보 통신		▶정보통신 윤리						
	54	수업 중에 사전 허용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				
	55	정보통신매체를 비윤리적 목적 또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학생	○	○	○	○	○	○
기타		▶기타						
	56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학급자치규약이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	○	○	○	○	○

제6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3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38조 【자기주도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39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 시설물 및 교구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제41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간, 남녀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2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2. 경찰청 112
 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5.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 및 보호자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④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교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수시로 지도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외활동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양성평등 및 연인간 교제】 교내에서 모든 학생들은 상호간에 예절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이 일방적인 스토킹,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행할 경우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및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연인 간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⑥ 교내에서 연인간 교제 등으로 지나친 신체접촉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45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교와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인문사회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교사, 위촉한 전문강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46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체육관을 비롯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특별실을 사용할 경우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④ 전교사와 학생보호인력은 교내의 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7조 【용의사항】

-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한다. 여학생은 치마나 바지를 선택 착용할 수 있다. 단, 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한다.
 4. 파마, 염색, 머리 모양, 장신구, 색조 화장, 실내 모자 착용, 기타 필요한 용의사항은 학생 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5. 교복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여 입지 않도록 한다.
6. 명찰은 탈부착이 되거나,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학년별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7. 교실에서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동절기 등하교시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② 동·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착용한다.
 1. 동 복 : 11월 1일 ~ 3월 31일
 2. 하 복 : 5월 1일 ~ 9월 30일
 3. 춘추복 : 4월 1일 ~ 4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 ③ 교복의 형태는 <표-1>, <표-2>, <표-3>과 같다.
 1. 동복은 재킷, 바지 또는 치마,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또는 리본, 조끼를 기본으로 하며 카디건을 입을 수 있다.
 2. 하복은 상의(반팔 셔츠 또는 블라우스, 생활복)와 바지 또는 치마를 기본으로 하며 조끼를 입을 수 있다.
 3. 춘추복은 동복에서 재킷을 제외한 형태이다.
 4. 체육복과 후드 집업을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표-1>



<표-2>



<표-3>

제48조 【학급 내 주변】 학급 내 주변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과 기타사항은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른다.
- ④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 ⑤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49조 【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5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지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 ⑦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51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선·후배, 동료학생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한다.
- ③ 교외의 단체 활동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 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5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7장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제53조 【목적】 운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 【명칭】 이회는 『운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55조 【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6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7조 【효력정지】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학교장이 정하는 문제 발생 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58조 【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습, 동아리 활동 등 학력향상 및 취미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훈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이회의 모든 활동은 교칙과 이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장 1인, 부회장 2인(1학년 1명, 2학년 1명)
- ② 각 부의 부장 1인(2학년), 차장 1인(1학년)

제60조 【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기획행정부 : 학생자치회의 각종 협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소통홍보부 : 제반사업의 계획, 학교행사의 홍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③ 문화체육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④ 건강지원부 : 급식·영양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교육활동부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
- ⑥ 생활안전부 :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제6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하고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 받아 임명된다. 단, 후보자가 없을 시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된 학생을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② 각 부의 부장, 차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자치회장 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위촉한다.
- ③ 임원은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6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2학기 개학일부터 익년 1학기말까지로 한다. 임원이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4조 【대의원회 구성】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자치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제65조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⑤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66조 【대의원회 회의】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번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을 학생들에게 공고해야 하고, 대의원은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은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⑥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7조 【운영위원회】

- ① 구성 :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안 수립
 3.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및 집행
 4.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팀 운영
 5. 기타 중요한 의안

제68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담당 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9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회계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학기부터 이듬해 1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2조 【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제73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교 학생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한한다.

제75조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학생선거관리위원은 학생자치회 대의원 중 8명을 선임한 후 선거일을 공고한다.
- ② 학생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학생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공고일로 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이다.
- ④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출석부 사본 또는 명렬표를 대신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3.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76조 【선거 시기 및 공고】

- ① 매년 5월말 - 6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77조 【선거권자】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78조 【입후보 자격】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선거 공고일 현재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각각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9조 【자격상실】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80조 【입후보 등록】

- ① 정·부회장 후보가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하며,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학생 추천서 1부(선거권자 20명~30명 이내)

3. 교사 추천서 1부
- ②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등록 공고한다.
- ③ 입후보 등록 후 제62조에 위반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공고한다.

제81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 ② 1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자를 둘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원 및 찬조 연설원의 명단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된 명찰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2. 다른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3.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82조 【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들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벽보의 규격은 가로 38cm, 세로 53cm로 한다.
- ③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벽보를 기호 순으로 붙인다.

제83조 【소견발표】

- ① 후보자 및 연설원은 합동 소견발표와 개인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합동소견발표 및 찬조연설은 선거기간 중 1회로 하며 후보자 및 찬조 연설원은 각각 5분 이내로 한다.
- ③ 개인 소견발표 및 기타 선거 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4조 【투표】

-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 장소는 학년별로 1개소를 설치 운용한다.
- ③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선정,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제85조 【개표】

- ① 개표는 지정된 1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표)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선상에 표한 것)

제86조 【당선인 결정】

- ① 학생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공고한다.
- ②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팀이 나올 경우에는 학생대의원회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학생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 하여야 한다. 공고 기간은 일주일간으로 한다.
- ④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제87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2.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진행을 무효로 결정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8조 【보궐선거】

- ①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9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 ① 선거와 당선에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내에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0조 【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학급자치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및 학급자치회 구성

제91조 【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자치회장·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임명된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 【정수】 각 학급에 자치회장·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93조 【후보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94조 【자격상실】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95조 【선거 및 임명 절차】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을 분리 선출한다.
- ② 학급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학생(급)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 받아 임명된다.
- ③ 학급 재적 의원 2/3 이상의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선거 관리의 편의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담임교사는 선거를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

제96조 【선거 시기】 자치회장·부회장의 선거는 학급별 학급자치회의 시간에 실시한다.

제97조 【임기】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는 6개월(한 학기)로 한다.

제98조 【보궐 선거】 자치회장·부회장에 임명된 자가 제92조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3조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보궐 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9조 【자치회장의 지위, 임무】

- ① 자치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 및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② 자치회장은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학급 풍토의 조성 노력한다.
- ③ 자치회장은 학급의 청결 유지 및 비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00조 【부회장의 지위, 임무】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학급자치회 부의장 및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101조 【기타 임원의 임명】 자치회장·부회장을 제외한 학급회 임원은 학급자치회원이 추천하여 학급자치회의 승인을 받아 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위촉한다.

제102조 【학급자치회 조직 및 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조직에 따른 자치회장 및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자치회장) : 학급자치회 의장, 학급통솔, 출석파악, 교과시간 및 집회 시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시사항 전달, 교실환경 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학급자치회 대의원 업무 등에 관한 일
- ② 부의장(부회장) :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역할을 대행함
- ③ 서 기 : 학급내의 각종 협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출석부 관리
- ④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구성, 학급행사 홍보, 회계 등
- ⑤ 학예부 : 학·예술 활동, 학급내의 환경 게시물 관리
- ⑥ 체육급식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 급식·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 ⑦ 봉사부 : 학급행사 뒷정리,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⑧ 생활자치부 : 학생생활규정과 학급자치규약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3조 【학급회의의 진행】

- ①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의장을 중심으로 학급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협의하거나 계획하고 실천한다.
- ② 학급회의는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사전 회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③ 학급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104조 【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학급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규정의 제·개정

제105조 【위원회 설치목적】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조례의 제정 후 학칙 및 각종 규정(이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106조 【위원회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대표 3명, 학부모(보호자)대표 2명, 교사 대표 3명, 전문가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07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⑤ 학교장

제109조 【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0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11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공시한다.

제11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3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학생생활규정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정·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1주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개정】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 본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개정】 본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2.28.>
- 제9조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9.6.27.>
- 제10조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9.9.19.>
-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7.>
- 제12조 【개정】 본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4.13.>
- 제13조 【개정】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2.11.14.>
- 제14조 【개정】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6.>
- 제15조 【개정】 본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3.12.06.>
- 제16조 【개정】 본 규정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4.4.10.>
- 제17조 【개정】 본 규정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25.6.9.>
- 제18조 【개정】 본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6.7.23.>

- 33 -

서식 4 >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성별	남 / 여
사안 제목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관련 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생생활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 필요시
3. 사실 확인서 1부. ※ 필요시

서식 5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 위반 행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운중고등학교장

서식 6 >

서면 의견서

관련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서명)

서식 7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조에 의거 조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 결정 통보 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 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 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운중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관계	본 인 () 보호자 ()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20 년 월 일 (청구인) : _____ (인) 운중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서식 9

재심의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조에 의거 재심의 조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 결정 통보 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 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개최일			
조치 결정 내용			
불복절차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운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10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학생	성명		소속	()고등학교 ()학년 ()반	
피청구인	학교명	() 고등학교		소재지	()시	학교장 성명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연락처		결과통지서 발송 방법
				결과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일
						인편, 등기 (등기번호)
기 준				지도 및 조치 내용		
퇴학 처분 대상자의 적법성(시행령 제31조 제5항)				※징계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를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징계 시 의견 진술, 인격 존중 등 교육적 방법 적용사항						
사유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단계별 적용과 개선의 기회 부여				※ 이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내역 등 해당 학생이 행한 구체적인 선도 위반 사실을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분량의 제한 없음)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사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퇴학 전 재심의, 가정학습 부여 등 교육적 조치 사항						
기타(인권 존중, 종합의견)				※ 학교의 종합적인 최종 의견을 자세히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

[첨부: 증빙자료 목록(증빙자료 첨부) 총 8부]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1 » 학생자치회장·부회장 후보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한자 :)		
학년·반		생 년 월 일	
징계사실 여 부			확인자 : 인문사회부장(인)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 20 년도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담임교사 추천서 1부.
2. 학생추천서 1부.

20 년 월 일

위 본인 : (인)

운중고등학교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12 » 학생자치회장·부회장 후보자

학생 추천서

■ 추천후보자

- 학 생 자 치 회 장 후보자 : 학년 반 성명 :
○ 학생자치회부회장 후보자 : 학년 반 성명 :

위 학생들을 20 - 20 년도 운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정·부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연번	학 번	성 명	서 명	연번	학 번	성 명	서 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0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학년 반 번 성명 : (인)

운중고등학교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13 » 학생자치회장·부회장 후보자

교사 추천서

■ 추천후보자

○ 성 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 추천사유:

위의 사람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 20 년도

학생자치회(회장) (부회장)선거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교사 (인)

운중고등학교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귀중